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350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

제정 2016. 11. 1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영유아보육법」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영유아"란 만0세~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- 2. "보육"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.
- 3. "어린이집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4. "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교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- 5. "보호자 "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

-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명칭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SeoulTech 어린이집(이하 "어린이집" 이라 한다)으로 한다.
- 제5조(소재지)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.
- 제6조(기능)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영유아 보육
 - 2. 영유아 보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
 - 3. 보육 아동의 발달 진단 및 상담 지원
 - 4. 영유아 보육관련 부모교육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
 - 5.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
- 제7조(운영) ① 어린이집의 관리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.
 - ② 총장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, 위탁 운영자선정 평가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위탁 운영 법인·단체 대표 또는 개인 및 원장의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.
- 제8조(감사 및 운영평가) ①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 또는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.

- ②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한다.
- ③ 총장은 감사 및 운영평가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"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"에 따라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게 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9조(보육교직원의 구성 및 임면)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, 주임보육교사, 보육교사 등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둔다.
 - ② 보육교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위탁의 경우에는 총장과 협의 하여 위탁 운영 법인·단체 대표 또는 개인이 보육교직원을 임면한다.
 - ③ 주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 - ④ 보육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금·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다. 다만,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운영 법인·단체 대표 또는 개인이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- 제10조(직무) ①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, 그 밖의 직원을 지도·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.
 - ② 주임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어린이집운영위원회) ① 어린이집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

- 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보육교사 중 1명과 보호자 중 5명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주임보육교사로 한다.
- 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간 4회(분기별 1회이상)이상 개최한다.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어린이집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
- 2.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개정
- 3.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제정 ㆍ개정ㆍ폐지
- 4.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
- 5. 어린이집 운영 예산 및 결산의 심의
- 6.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2조 (보육정원)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49명으로 하고, 보육시설 면적의 증감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.
- 제13조(보육대상 및 입소자격) ①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0세~만5세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어린이집의 입소자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, 산학협력단 직원 및 재학생의 자녀를 원칙으로 하며, 배정비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4조(입소순위 및 시기) ① 입소 순위는 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따른다.
 - ② 입소 시기는 매년 3월 초로 하고,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입소할 수 있다.
 - ③ 입소자 결정은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제15조(보육내용과 시간) ① 보육내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 - ②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(07:30~19:30)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 할 수 있다.
- 제16조(보육과정)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은 영아반, 유아반으로 하며, 각보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7조(보육료)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, 영유아보육법 시행령,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시·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제18조(재정) ①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육료, 지원금,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.
 - ② 어린이집의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하는 법인·단체 대표 또는 개인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
 - ③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당해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.
 - ④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- 제19조(지침)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(제350호, 2016. 11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